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1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2 |
| IV. 검토의견 .....                                                  | 3 |
| 1.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br>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 | 3 |
| 2.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 6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12.

## II.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제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 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Ⅲ. 주요내용

대의원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에 관한 법문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60조의6).

#### IV. 검토의견

##### 1.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개정안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생략)                                                              |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u>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u> | ⑤ -----<br>----- <u>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u> 의 임직원-----<br>-----.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원이 조합의 정관변경, 해산 또는 분할, 합병, 조합원의 제명 등 중요한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원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맡은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상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sup>1)</sup>의 임직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sup>2)</sup> 대의원 겸직금지의 입법취지가 이해충돌 방지 등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고, 현행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의 겸직금지 목적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법문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능성이 낮으므로 해당 문구를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법제처 20-0443호).

을 포함하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 2.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개정안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 현행                                                                                      | 개정안                                                                               |
|-----------------------------------------------------------------------------------------|-----------------------------------------------------------------------------------|
|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u>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br>----- <u>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 등</u> -----<br>-----. |

현행법에서는 우선출자<sup>3)</sup>의 발행·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제11조의9<sup>4)</sup>에서는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란 조합에서 우선출자증권을 우선출자자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로, 이러한 매입소각은 조합의 자기자본의 감소 또는 운영재원의 조달(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기 운영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됨.

3) 우선출자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를 말함.

4)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 등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23 |